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재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1
----------	-------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차재홍, 김영미, 김운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서종수, 송병길, 이필래,
전승학

1.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횟수에 제한을 둠(안 제4조)
- 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개정함(안 제15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관계법규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4.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입법예고 : 필요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 불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원회에 대하여”를 “위원회에게”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 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사회적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 ----- 뜻은 -----.</p>
<p>제4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u>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u>----- -- <u>한차례만 연임</u>--. ----- ----- -----.</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u>위원에 대하여</u>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수당 등) ----- <u>위원에게</u>----- ----- ----- -----.</p>
<p>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u>구청장은 사회적기업</u>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① <u>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 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사회적기업</u> --.</p>

<신 설>

제15조(조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조세 감면) -----
----- 「지방세특별제한법」-----
-----.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에게 -----
-----.